

여성장애인(에 관한) 조항을 위한 정부의 제안

의장 초안	정부의 제안
제4조 일반의무 당사국들은 장애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인권 전반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도록 책임진다.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.	제4조 일반의무 당사국들은 장애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인권 전반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, 특히 <u>사람(persons)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성인지적관점(gender perspective)을 주류에 포함시킴으로써</u>, 이를 보장하도록 책임진다.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.
제6조 여성장애인	제6조 여성장애인 1. 당사국들은 여성장애인의 인권전반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 2. 당사국들은 여성장애인이 전생애를 걸쳐 직면하는 성별(gender)과 장애에 근거한 다중차별 (multiple- discrimination)과 특정 불이익을 규정함으로써(addressing) 여성장애인이 자유롭고 안전하며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장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 이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포함한다. 그러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. → Art 12, 18조의 내용 (a) 당사국들은 법적으로 여성장애인이 자유롭고 안전하며 자주적으로 살아가도록 보장하기 위해 여성과 장애인에 관한 법률에서 여성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별 기준을 <u>파러한다(include)</u>. <u>필수적</u> (b) 당사국들은 자료의 수집이 성해체적방식(gender disaggregated way)으로 이루

	어지며 여성장애인이 자료수집과 프로그램의 디자인과 이행에 포함되도록 보장한다. 31 <i>여성장애인의 자료수집</i> (c) 당사국들은 여성장애인을 가정, 기관 및 공동체에서의 성착취,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. 6 <i>등</i> (d) 당사국들은 여성장애인(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)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며, 그들의 능력과 요구에 상당하는 교육과 기술향상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. 24 <i>등</i> (e) 당사국은 노동시장에서 장애와 성에 근거한 여하의 차별도 금지하며, 특히 사업장에서 임신, 출산 및 산후기간동안 장애여성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 21 <i>등</i> (f) 당사국들은 강제불임 금지를 포함하여, 여성장애인의 재생산권(reproductive rights)의 보호하며, 가족계획, 부모역할(parenthood), 임신, 출산 및 산후 기간과 같은 분야에 있어 여성장애인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보급할 것을 보장한다. 23. 24 <i>등</i> 24. 25 <i>등</i>
--	---